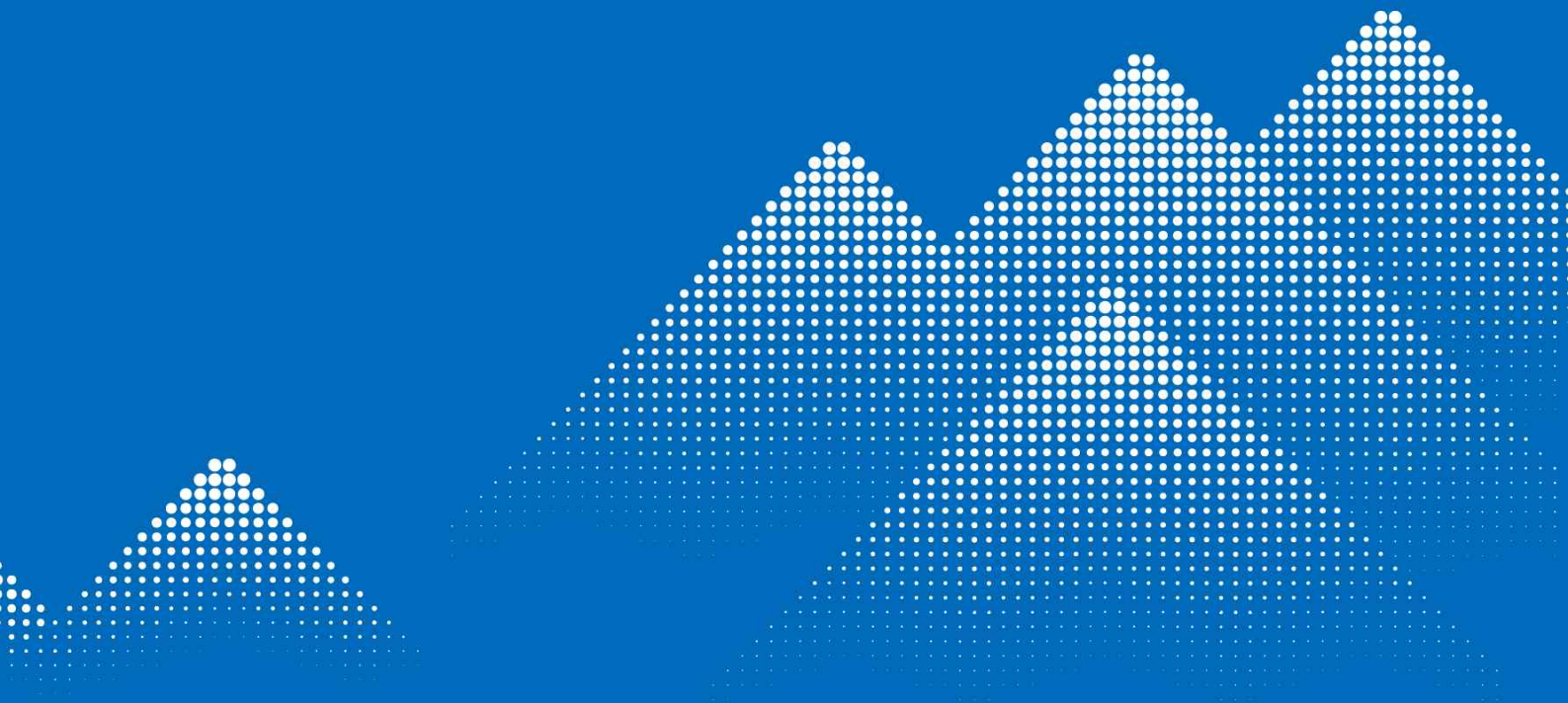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선언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금지 선언

JB금융그룹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JB금융그룹의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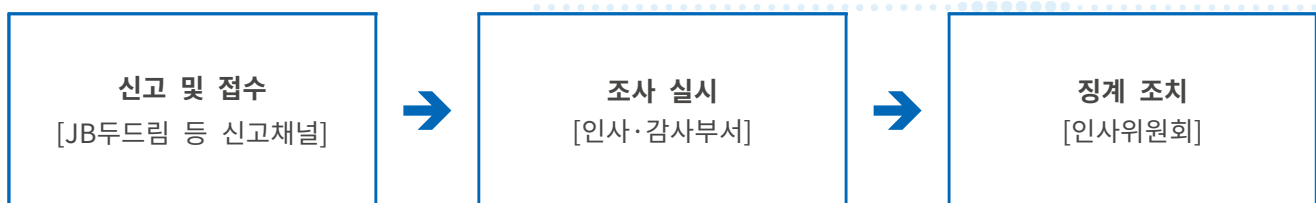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4. 발생 시 조치

사건 발생 시 조치 프로세스



-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전담 창구에 보고해야 합니다.
- 회사는 피해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지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 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상벌지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게 재발방 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전 임직원 예방 교육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